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자격기준(2026보육사업안내)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자격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명시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채용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 각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43-237-8770(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시설관리사 지원 관련 문의)
☎ 문의 043-231-8768(상담전문요원, 발달지원전문요원 지원 관련 문의)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나. 직원 임면·관리

2) 직종별 자격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자격요건</th></tr>
<tr><td rowspan="10">사업
전담
인력</td><td rowspan="3">보육전문
요원</td><td rowspan="2">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td><td>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 colspan="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상담전문
요원</td><td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6">발달지원
전문요원</td><td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td></tr>
<tr><td colspan="2">「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td></tr>
<tr><td colspan="2">「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
진 사람</td></tr>
<tr><td colspan="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td></tr>
<tr><td colspan="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td></tr>
</table>

※ 구법('05. 1. 30. 이전) 또는 "2003~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개정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시행이후 퇴직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개정 영유아보육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시행당시 종전 규정 등으로 계속 근무한 때에는 개정법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봄. 전산원은 2014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요원은 2016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상담·심리분야'는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을 말하며, '상담관련 실무경력'은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을 말함. 상담전문요원은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